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4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77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7. 11.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피고가 2017. 4. 6. 원고에게 한

가. [redacted]구 B 토지 381.8㎡, 건물 121.28㎡ 매매에 관하여 한 취득세 36,300,020원, 교육세 3,084,130원, 농어촌특별세 652,980원의 부과처분을,

나. [redacted]구 C 토지 257.3㎡ 매매에 관하여 한 취득세 34,641,740원, 교육세 2,972,590원, 농어촌특별세 1,486,220원의 부과처분을,

다. [redacted]구 D 토지 204.3㎡, 건물 478.74㎡ 매매에 관하여 한 취득세 29,689,010원, 교육세 2,513,450원, 농어촌특별세 1,256,650원의 부과처분을,

라. [redacted]구 C 건물 562.26㎡ 신규(축)에 관하여 한 취득세 19,099,830원, 교육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4

931,080원, 농어촌특별세 375,780원의 부과처분을,

마. [redacted]구 C 건물 45.48㎡ 증축에 관하여 한 취득세 1,476,400원, 교육세 62,350원, 농어촌특별세 77,9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와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 하에, 2015. 10. 6. F 외 1인으로부터 매수한 [redacted]구 C 토지 257.3㎡와 그 지상의 연면적 합계 607.74㎡(= 신축 부분 562.26㎡ + 증축 부분 45.48㎡)인 4층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2층 내지 4층 주택)[1]에 관하여, 2015. 10. 22. G으로부터 매수한 [redacted]구 B 토지 381.8㎡와 그 지상의 연면적 합계 121.28㎡인 건물에 관하여, 2016. 1. 25. H으로부터 매수한 [redacted]구 D 토지 204.3㎡와 그 지상의 연면적 합계 478.74㎡인 4층 건물(숙박시설)에 관하여 각 E 앞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3. 30. 위와 같은 원고와 E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1) 주문 제1의 나., 라., 마.항의 취득세 등 부과는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한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4

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2017. 4. 6.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따른 수시과세로서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4. 14.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원고의 주소지인 "[redacted]구 I, J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는 2017. 4. 20. '폐문부재'를 사유로 미배달되어 반송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5. 15. '거소지 불명'을 이유로 위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4. 독촉고지서(이하 '이 사건 독촉고지서'라고 한다)를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위 독촉고지서는 2016. 6. 21. '폐문부재'를 사유로 미매달되어 반송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11. '거소지 불명'을 이유로 위 독촉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독촉고지서가 송달될 무렵에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업무로 인하여 낮에는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위 납세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가 정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4

확인되어 반송됨'이라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납세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와 독촉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문서로써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등에서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4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제1호에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의 '받을 사람이 없는 것' 역시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독촉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이 사건 주소지에 위 납세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받을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납세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는 그에 대하여 '업무로 인하여 낮에는 집을 비우는 탓에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데 주택의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도 전화 통지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독촉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송달의 부적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4

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위 납세고지서와 독촉고지서의 송달을 회피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것과 같이 재판청구권 보장 등의 관점에서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필요한 점(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 두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전달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적법한 송달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 주소하고 있었던 이상 설령 원고가 의도적으로 위 납세고지서와 독촉고지서의 송달을 회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독촉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과세처분일인 2017. 4. 6.으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이 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4

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러한 제소기간이 개시될 여지조차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이필복

판사 목명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4

[별지]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4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